

特許의 登錄과 權利保護와의 相關性(2)



李 華 植

<特許廳 登錄課 行政事務官>

지난 11月號에서는 特許權의 設定登錄 節次와 登錄된 權利를 維持하기 위한 特許料納付上의 留意事項을 살펴보았다. 이번 號에서는 最初權

利設定登錄을 畢한 後부터 發生되는 特許關係의 變動 및 登錄의 類型을 살펴 본 다음 登錄申請 節次와 登錄의 效力を 中心으로 記述코자 한다.

3. 特許登錄의 現況과 類型

① 84年度 特許登錄現況 (11. 30 現在)

단위 : 件

登錄區分	登 錄 內 容	特 許	實 用	意 匠	商 標	計	83年同期 實績	83年度 增 加	對比率
新規登錄	最 初 設 權	2,130	2,109	6,521	10,847	21,607	20,255	6.7	
實 施 権 登 錄	專 用 實 施 権	16	74	119	—	209	157	33.1	
	通 常 實 施 権	9	39	103	—	151	104	45.2	
	計	25	113	222	—	360	261	37.9	
移轉登錄	一 般 承 繼	—	2	6	82	90	56	85.0	
	相 繼 渡	2	—	11	24	37	20	60.7	
	讓 計	63	197	558	969	1,787	1,785	0.1	
		65	199	575	1,075	1,914	1,861	2.8	
附記登錄	更 變 正 更	18	95	103	537	753	934	419.4	
		358	313	571	3,230	4,472	4,704	44.9	
	計	376	408	674	3,767	5,225	5,638	47.3	
商標登錄	指 定 商 號 追 加	—	—	—	425	425	419	1.4	
	商 標 更 新	—	—	—	4,085	4,085	2,697	51.5	
	通 常 使 用 權	—	—	—	370	370	464	420.3	
	計	—	—	—	4,880	4,880	3,580	36.3	
審判登錄	審 判 請 告	102	278	386	389	1,155	918	25.8	
	審 判 確 定	58	166	174	178	576	404	42.6	
	取 下	35	68	105	230	433	307	42.7	
	計	195	512	665	797	2,169	1,629	33.1	

登録区分	登 錄 內 容	特 訸 實 用	意 匙	商 標	計	83年同期	83年對比增 實 用 加 率 (%)
						實 用	加 率 (%)
	最 初 納 付	2,139	2,109	6,521	10,847	21,607	20,555
登 錄 料 納 付	4年次分 以後 分納付 過 誤 納 付 計	4,677 98 6,905	3,553 182 5,844	5,696 123 12,340	— 176 11,023	13,926 579 36,112	11,491 323 32,369
其他登錄	特 許 管 理 人 選 擇 假 登 錄 質 權 設 定 權 利 消 滅 計	1,339 — — 754 2,093	426 — 8 974 1,408	313 — 129 11,920 12,362	1,168 6 2 12,800 13,976	3,246 6 139 26,448 29,839	2,758 9 3 18,220 20,990
	合 計	11,789	10,593	33,359	46,365	102,106	86,583
							17.9

専門實施権의 設定登錄의 大部分이 여기에 屬한다.

② 特許登錄의 類型

○ 申請與否에 의한 分類

職權에 의한 登錄

當事者 또는 利害關係人이나 다른 機關으로부터 登錄申請이 없이 特許廳長의 職權에 의한 登錄을 말한다.

申請에 의한 登錄

登錄의 申請은 法令에 別途로 規定이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特許當事者の 申請으로 登錄이 되며 大部分의 登錄이 여기에 屬한다.

囑託에 의한 登錄

當事者外 法院 및 行政官廳이나 公共機關의 囑託에 의한 登錄을 말한다. 囑託에 의한 登錄으로는 法院으로부터 囑託되는 特許權에 關한 處分의 制限登錄(特許登錄令 第20條), 特許에 關한 訴가 提起된때에 豫告登錄囑託(特許登錄令 第22條)等이 있다.

信託에 의한 登錄

信託이라함은 財產權의 移轉 其他 處分을 위하여 他人으로 하여금 一定의 目的에 따라 財產의 管理 또는 處分을 말한다.

特許에 關係되는 信託의 登錄은 受託者が 登錄權者가 되고 委任者가 登錄義務者가 된다.

○ 記載內容에 의한 分類

記入登錄

새로운 登錄原因에 의하여 特許原簿에 記入하는 登錄이다. 여기에는 特許權의 設定, 移轉,

更正登錄

當初登錄時錯誤 또는 漏落이 있을 경우에 잘못된 登錄을 實體와 一致시키기 위하여 既存의 登錄事項의 一部를 變更하는 登錄을 말한다. 登錄의 누락은 申請人側의 原因에 의한때도 있지만 登錄公務員의 過失에 의한 境遇도 있을 수 있다.

例컨대 當初登錄時 登錄權者的 住所가 不正確하거나 錯誤로 甲住所地로 登錄한 後 乙住所地로 移轉하고 다시 丙住所地로 移轉한 경우, 當初 甲住所地를 訂正하는 것은 “更正登錄”이라하고 更正後 更正된 甲住所地를 丙住所地로 바꾸는 登錄을 “變更登錄”이라 한다.

變更登錄

記入登錄에 의하여 登錄된 内容이 그후 事情變更에 따라 登錄된 内容과 實體가 不一致하게 된 때 이를 一致시키기 위하여 登錄의 一部를 變更하는 登錄이다.

登錄된 内容과 實體가 不一致하다는 點에서는 更正登錄原因과 같으나 變更登錄은 當初登錄 内容이 錯誤나 漏落이 없는 正當한 登錄이었으나 登錄後에 發生된 住所地, 商號等 變更으로 當初登錄内容을 變更登錄하는 것이므로 이점에서 잘못된 登錄을 訂正하는 更正登錄과 相異하다.

消滅登錄

特許權이 當事者の 義務怠慢 또는 抛棄等으로 法에 의해 消滅될 때 特許原簿에 消滅登錄하는 것을 말한다.

回復登録

權利의 實體가 存在함에도 불구하고 特許原簿上 消滅되었을 때 消滅된 權利를 回復시키는 登錄을 말한다. 回復登録에는 特許原簿의 全部 또는一部가 火災等으로 滅失되었을 때 舊登録을 回復하는 滅失回復 登錄과 適法한 特許料를 納付하였으나 납부서 未提出로 인하여 登錄原簿上 登錄料不納原因으로 消滅登錄된 경우와 같이 事實上 權利가 存續하나 原簿上 消滅된 權利를 다시 回復시키는 回復登録이 있다.

○ 登錄의 方法乃至形式에 의한 分類

主登録

登錄原簿上의 各欄(登録番號, 權利欄, 權利者欄, 管理人欄等)에 最初로 登錄하는 原登録으로서 獨立登録이라고도 할 수 있다.

附記登録

主登録의 變更, 訂正, 補充等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登錄이다. 附記登録은 登錄名義人の 表示變更, 質權設定, 一部가 抹消된 登錄의 回復, 特許權以外의 權利의 變更, 其他 登錄의 更正等을 들 수 있다.

○ 登錄의 效力에 의한 分類

終局登録

特許出願된 内容이 審查官의 查定을 거쳐 特許原簿에 登錄되는 設權登錄과 登錄된 權利가 審判等 紛爭이나 權利變動契約을 거쳐 最終的으로 確定되었을 때 이를 原簿에 登錄하는 確定登錄이 있다. 特許法上 權利의 終局登録은 特許權利의 效力發生乃至는 第3者에 對抗要件이된다. 豫告登錄에 의한 確定登錄이나 假登錄에 의한 本登錄或 終局登錄이라 할 수 있다.

豫備登録

종래 終局登錄을豫想하여豫備的으로 登錄하는 것으로 豫告登錄은 特許原因의 無效나 取消等訴가 提起되었을 때 그 事實을 第3者에게 公示하기 위하여 職權으로 登錄原簿에 登錄하는 것이고 假登錄은 終局登錄, 即 本登錄의 順位를 保存하기 위한 登錄으로서 登錄申請에 必要한 節

次上의 要件이 具備되지 아니하거나 特許權等의 設定變更 또는 消滅에 關하여 請求權을 保全하기 위해 于先登錄하는 制度이다.

4. 特許의 登錄節次

① 登錄申請權者

登錄의 申請은 法令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登錄權利者와 登錄義務者가 共同으로 申請하여야 한다(特許登錄令 第15條1項) 여기서 登錄權利者라함은 例컨대 特許權의 移轉登錄申請에 있어 權利의 讓受人과 같이 實體의 權利關係에 있어 利益을 받는 者이고 登錄義務者는 그 反對로 權利의 讓渡人을 말한다.

特許關係의 登錄申請에는 登錄權利者와 登錄義務者가 共同으로 申請하는 것이 原則이나 다음의 境遇는 單獨申請이 可能하다.

○ 登錄權者만으로 申請

登錄申請書에 登錄義務者の 承諾書를 添附한 때
判決 또는 相續과 一般承繼에 의한 登錄申請
假登錄의 申請에 있어 法院의 假處分命令의 正本을
添附한 때

○ 登錄名義人만으로 申請

登錄名義人の 表示變更 또는 更正 登錄申請

○ 特許管理人만으로 申請

在外者 特許의 管理人選任 또는 變更
登錄權利者와 登錄義務者로부터의 代理權을 委任받은 各種 登錄申請

이와 같이 特許關係登錄 申請은 權利者와 義務者가 共同으로 申請할 수도 있고 單獨으로 申請할 수도 있지만 申請書에는 1件마다 2通을 作成하여 申請人이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② 申請節次

特許登錄의 申請節次는 特許關係登錄令에 部分의으로 規定하고 있지만 各種 登錄申請에 登錄原因書類를 添付하여야 한다.

○ 所定申請書에 添附할 具備書類

申 請 區 分	具 備 書 類	備 考
1. 登錄料納付書提出	① 納付領收證(書類添付用) 登錄料納付書下端에添付	○ 根據：特許法 76條 實用新案法 23條, 意匠法 42條, 商標法 40條
2. 專用實施權設定登錄	② 第3者의 許可, 認可, 同意, 承諾이 必要한 境遇, 그 證明書 1通 ③ 登錄義務者の 印鑑證明書 1通 ④ 委任의 경우 그 代理權을 證明하는 委任狀 1通	○ 根據：特許法 72條, 實用新案法 20條, 意匠法 38條.
3. 通常實施權設定登錄	① 通常實施權 許諾書 1通 ② 其他 具備書類를 併 專用實施權 設定登錄時同一	"
4. 特許(登錄)權 移轉登錄	① 다음 該當書類 각 1通 ○ 一般承繼 法人登記簿謄·抄本 ○ 相 繼 相續人의 戶籍謄·抄本 ○ 其他는 讓渡證 ② 第3者의 許可·認可·同意, 承諾이 必要한 경우 그 證明書 1通 ③ 外國人은 國籍證明(法人은 法人證明書)書 1通 ④ 登錄義務者の 印鑑證明書 1通(印鑑制度가 없는 外國人은 이에 準하는 證明書 1通) ⑤ 委任의 境遇 그 代理權을 證明하는 委任狀 1通 ⑥ 商標權移轉時는 다음 書類를 追加添付하여야 함 ○ 相繼과 一般承繼의 경우를 除外한 移轉은 移轉公告(日刊新聞) 1部 ○ 移轉商品을 營業과 같이 移轉함을 證明하는 書類 1通 - 內國人間에 移轉時는 다음에 該當하는 書類中 1通 • 營業과 함께 移轉한다는 事實이 記載된 公證人의 公證書 • 營業과 같이 讓渡 讓受한다는 事實이 記載된 讓渡讓受證書 또는 讓渡 讓受契約書(公證人의 認證이 있는 것에 限함) • 營業의 移轉에 關한 稅務署長의 確認書 - 外國人과 內國人間에 移轉時 다음에 該當하는 書類中 1通 • 當該營業의 移轉에 關한 當該國駐在 韓國公館長의 確認書 • 營業의 移轉에 關한 主務部長官의 確認書	○ 外國機關 또는 韓國公館長發行이나 外國公證人 發行이면 可함 ○ 印鑑證明은 3個月以內 發行되어야 함. ○ 印鑑에 準하는 證明書로 公證人의 公證書로 可함 ○ 公告時는 商標登錄番號, 商標, 主要指定商品, 商標權의 讓渡 및 讓受人의 姓名, 住所, 移轉 年月日을 明記하여야 함.
5. 登錄 名義人 表示의 更正 또는 變更	① 住民登錄表, 戶籍謄·抄本, 法人 登記簿謄·抄本等 ② 外國人의 境遇 國籍證明(法人은 法人證明書)書	○ 根據：特許證錄令第 17條 ○ 住所나 住民證錄番號의 變更登

申 請 區 分	具 備 書 類	備 考
6. 指定商品追加登錄	<p>1通 ⑥ 委任의 境遇 乙 代理權을 證明하는 위임장 1通</p> <p>① 商標登錄料納付書 1通 納付領收證(書類添付用)을 納付書 下端에 添付</p>	<p>錄申請은 住民登錄證提示로 添付書類를 省略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根據：商標法 40條.
7. 商 標 更 新	<p>① 商標登錄料納付書 1通 ○ 納付領收證(書類添付用)을 納付書 下端에 添付</p> <p>○ 納付書에 地方稅納付領收 畢確認書 添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根據：商標法 21條 ○ 更新登錄料 : 70,000원
8. 商標의 通常 使用權 設定登錄	<p>① 通常使用權設定契約書 1通 (다만 技術導入者가 政府에 技術導入을 申告하 여 主務部長官이 受理한 境遇로서 同技術導入 契約書로서 登錄原因을 證明할 수 있을 때는 別途로 契約書 添付 不要)</p> <p>② 品質의 同一性을 保障할 수 있는 書類 1通</p> <p>③ 商標의 使用狀態를 表示하는 書面 1通</p> <p>④ 第3者의 認可・許可 等의 承諾이 必要한 境遇 乙 證明書 1通</p> <p>⑤ 外國人의 境遇 國籍證明書(法人은 法人證明書) 書 1通</p> <p>⑥ 登錄義務者의 印鑑證明書, 다만 印鑑制度가 없 는 外國人은 이에 準하는 證明書 1通</p> <p>⑦ 委任의 境遇 乙 代理權을 證明하는 委任狀 1通</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根據：商標法 29條 ○ 技術導入 契約書에 包含記載되어 있어야 할 事項은 商標登錄 番號, 通商 使用權의 範圍 및 指定商品等 有 ○ 根據：商標法 施行令 7條 ○ 根據：商標法 31條2項 및 第57 1~2項
9. 特許管理人選任登錄	<p>① 登錄原因을 證明하는 委任狀 1通 ○ 改任의 境遇는 改任證明 ○ 抹消의 境遇는 解任書 또는 辭任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根據：特許法 22條 ○ 委任狀에는 登錄番號나 權利의 名稱委任의 內容, 委任日字 受 任者와 委任者가 明記되어 있어 야 함.
10. 其他登錄 假登錄, 質權設定, 信託登錄, 權利消滅等	<p>① 登錄原因을 證明하는 다음 該當書類 1通 ○ 假登錄處分命令書正本 停止條件付讓渡契約書, 時期付 讓渡契約書, 代拂甩체 契約書, 代物甩 체 契約書.</p> <p>○ 質權設定契約書</p> <p>○ 權利 抛棄書等 權利抹消原因書類</p> <p>② 外國人의 境遇 國籍證明(法人은 法人證明書)書 1通</p> <p>③ 第3者의 許可・認可・同意, 承諾이 必要한 境 遇(假登錄除外) 乙 證明書 1通</p> <p>④ 登錄義務者의 印鑑證明書 1通</p> <p>⑤ 委任의 境遇 乙 代理權을 證明하는 委任狀 1通</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根據：特許登錄令 19條, 42條, 55條.

(3) 申請書 不受理要件

所定의 申請書에 위와 같은 具備書類를 添付
한 登錄關係申請書가 提出되면 登錄公務員은 申

請書의 方式審查 및 實質的 內容에 對한 審查를
거쳐 受理與否를 決定하는데 다음에 該當될 때
는 不受理하여 申請者에 反送된다. (特許登錄令
第34條) <계속>